

설계공모 질의답변서

구분			질의 내용
질의 1	1	[질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공사로 건물이 신축되고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법정 건폐율이 40%를 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는지? 해당 상황에 대해 학교측이 대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단계별 공사 과정에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일시적으로 병존하는 경우의 사용승인 및 건폐율·용적률 적용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공모안은 단계별 공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최종 준공 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질의]	현재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2,146.1㎡)과 지침서상 대지면적(11,525㎡)이 일치하지 않음. 정확한 대지 면적은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본 설계공모에서 적용하는 대지면적은 **11,525.00㎡**임. 이는 용산구고시 제2023-142호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이며, 설계공모 계획 시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질의]	제공받은 캐드 도면 중 배치도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근거 : 축척 없음, 건물 크기 기준으로 수정시, 과한 초과 대지면적 발생). 정확한 대지경계선이 그려진 배치도 제공 가능한지?
		[답변]	별도의 대지경계 CAD는 추가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된 현황측량도와 용산구고시 제 2023-142호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계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4	[질의]	‘북측 옹벽 전면 개선’은 해당 옹벽 전체 철거 후 복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기존 옹벽 중 일부만 철거 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답변]	사전기획안에서는 북측 옹벽 철거 및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공사순서는 참고안입니다. 참가자는 구조안전성, 시공성, 인접지 영향 및 사업비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북측 옹벽 전면 개선 목적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질의]	옹벽 복구시, 신축된 지하 건축물의 외벽이 옹벽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신축 지하구조물 외벽을 옹벽 기능과 일체화하여 계획하는 방안은 관계법령, 구조안전성, 인접지 영향 및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총공사비 범위 내인 경우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6	[질의]	외부시설 중 운동장과 지상주차장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지하주차장의 지역주민 개방 여부 및 운영방식은 현재 설계공모의 확정조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시설의 외부 개방은 학생의 학습권, 안전 및 학교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향후 학교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7	[질의]	현재 학교가 인근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중이거나 구상중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은 없으며, 향후 학생 안전 및 학교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8	[질의]	이와 관련하여 학생학습권 보장 및 학교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참가자가 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해도 되는지?
		[답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안은 본 설계공모의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며, 참가자의 자율 제안사항입니다. 제안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안전·학교보안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외부인 동선과 학교 내부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내용
질의 1	9	[질의] 제출도서 작성 지침 중, 설계 도판(A0)의 표현은 백색과 흑색으로만 표현 가능하다고 명기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설계설명서(A4) 및 USB 포함 파일 중 조감도 및 투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사항이 없음. 설계설명서나 조감도 및 투시도에는 흑, 백이 아닌 색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유채색 사용은 불가하며, 흑·백 및 그 사이의 무채색 명암 표현은 가능합니다.
	10	[질의]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p.6의 1.5 기본 방향 내용 중, [별첨1.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를 찾을 수 없음. 해당 자료 제공 가능한지?
		[답변] 해당 별첨자료는 에듀디자인을 통해 추가 제공 예정입니다.
	11	[질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상 조리실의 경우, 비고란에 고등학교/중학교 면적과 합산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관리실의 경우 중, 고등학교의 표기가 각각 다름. 중학교에 ‘관리실(31.08㎡)’ 이, 고등학교에 ‘관리실(52.60㎡):중학교와 공동사용’ 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전체 관리실의 면적이 약 83㎡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중학교 관리실 31.08㎡와 고등학교 관리실 52.60㎡를 합산하여 하나의 약 83㎡ 관리실로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면적 및 기능을 각각 반영하여 계획하되, ‘중학교와 공동사용’ 으로 명시된 공간은 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12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중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나와있지 않은 실명이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에 나오는데,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예시: 리빙스튜디오(중), 협력융합예술실(중), 학점제 연구실(고) 등
		[답변] 실명 및 필수 소요공간은 설계공모지침서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합니다.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에 기재된 리빙스튜디오, 협력융합예술실, 학점제 연구실 등은 별도의 추가 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공간의 기능적 취지를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공용공간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3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중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 고등학교 홀룸은 특수 학급 3개소 포함, 전체 18학급 설계를 제안, 또한 표 하단에 ‘개소 조정 불가’ 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p.49에 고등학교의 ‘홀룸은 학년별로 한 층마다 7반씩 구성’ 한다고 되어있음. 학급 수를 1개씩 늘려 전체 고등학교 학급수가 21학급이 되는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답변] 고등학교는 일반학급 15학급, 특수학급 3학급으로 총 18학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학급은 학년별 5개 학급으로 구성하되, 층별 배치는 교육과정 및 학생동선을 고려하고 학년별 동일층 배치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은 관련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4	[질의] 층별 교사연구실, 교무센터, 행정실, 영선실 등을 사용하는 각 실별 교직원 수?
		[답변] 각 실의 세부 사용인원은 별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설계공모지침서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면적 및 개소를 기준으로 계획하시기 바라며, 교직원 수는 재개교 시 학생·학급수 및 학교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	[질의] 중.고등학교 교육시간 정보를 받을수 있나요? (ex. 등하교, 점심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
		[답변] 등·하교, 점심 및 방과후 운영시간 등 세부 학사운영시간은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의 고정조건으로 별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동선과 공동사용시설의 시간대별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내용
질의 2	1	[질의]	[공모지침서p.4] : 대상지(용산구 서계동 259-3)의 대지 면적이 토지이용 계획(12,146.1 m ²)과 공모지침 면적(11,525.00m ²)이 서로 상이합니다. 제척 부분과 면적을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본 설계공모에서 적용하는 대지면적은 **11,525.00m ² **입니다. 용산구고시 제2023-142호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인 11,525.0m ² 및 경계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2	[질의]	[공모지침서p.26] : 배문중학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홀룸은 10개소, 특수학급 홀룸은 1개소로, 총 11개 홀룸이 구성됩니다. 3개 학년 구성 시 학년 별 홀룸 개수가 상이하게 분배되는데, 학년별 홀룸 개수는 설계자 자율로 구성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전체 홀룸 개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일반학급 10개소 및 특수학급 1개소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범위 내에서 학년별 배분 및 층별 배치는 교육과정, 학생동선 및 공간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질의]	[공모지침서 p.5] : 지침 상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기계실 및 전기실이 누락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산입해 계획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하주차장 1,920m ² 는 주차공간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계실·전기실 등 건축물 운영에 필요한 지원공간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건물규모 및 설비계획에 적합하도록 총 사업면적 범위 내 공용·서비스 공간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공모지침서 p.22] 7) 본 공모의 계획 수립 시 조경 설치 면적, 건축선 후퇴에 관한 규정, 체육장 면적 등 법적 기준에 대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지침 및 법규에 따라 체육장 면적 계산 시 실내 체육관 면적을 제외하고 7,300m ² 이상의 옥외 체육장 면적이 요구됨. 대지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체육장 면적 확보를 위해 실내 체육관 면적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내 체육관 면적 증가를 위해 연면적 증가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사업면적 상한은 15,790m ²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연면적 증가는 불가합니다. 체육장 면적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지 여건상 기준 면적 확보가 곤란하여 관련 법령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의 적용 근거와 이에 필요한 인허가·협의 절차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최소 기존 체육장 면적(약 4,200m ²)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의 내용
질의 3	1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4p] 다. 대지면적 : 11,525.00㎡ 제공된 CAD파일과 지침서상 대지면적이 상이하므로, 지침서상 명시된 대지면적 11,525.00㎡을 확인할 수 있는 캐드파일 제공을 요청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대지면적은 12,153.10㎡으로, 지침서와 상이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대지면적 11,525.00㎡를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기존 제공한 현황측량도를 참고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산구고시 제2023-142호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인 11,525.00㎡ 및 경계를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2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11p] 3.3 가. 7) 도판의 표현은 백색과 흑색으로만 가능 설계도판 작성시 흑백 계열(회색)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유채색 사용은 불가하며, 흑·백 및 그 사이의 무채색 명암 표현은 가능합니다.
	3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22p] 2.1. 가. 7) 체육장 면적 등 법적 기준에 대하여 설계에 충분히 반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학생 수 600명 이하의 경우 체육장 기준면적은 중학교 4,200㎡, 고등학교 4,8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대지면적 11,525.00㎡내에서 건축면적 및 조경면적 등 제반 계획 조건을 적용할 경우, 체육장 기준 면적 9,000㎡의 확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운동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과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600명 이하(총 448명)인 점을 감안하여, 체육장 기준면적을 고등학교 기준면적인 4,800㎡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체육장 면적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기준 4,800㎡를 참가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지 여건상 기준 면적 확보가 곤란하여 관련 법령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화 규정의 적용 근거와 이에 필요한 인허가·협의 절차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최소 기존 체육장 면적(약 4,200㎡)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설계공모 지침서 28p, 33p] 나. 4)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본관동 2개소, 체육관동 1개소를 설치 계획상 본관동과 체육관동이 분동이 아닌 경우는 본관동 2개소만 계획하면 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본관동과 체육관동의 분동 여부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는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라 본관동 2개소 및 체육관·급식실용 1개소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동에는 급식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하역공간에서 식자재 등 급식물품의 원활한 수직운반이 가능하도록 급식실의 위치와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관동과 체육관동이 일체형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도 각 엘리베이터의 사용목적과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총 3개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	[질의] [제공자료] 대상지 주변의 개발구역에 관한 고시 및 결정도 등 주변 개발사업의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 별도의 주변 개발사업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서울특별시·용산구 등 관계기관의 고시·공고 및 관련 도시계획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